

대학건강센터 규정

1973. 4. 30. 제정

2016. 2. 26.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건강센터(이하 “건강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2.29.>

제2조(직무) 건강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. <개정 2008.2.29.>

1.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
2.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진료 <개정 1977.10.14.>
3. 삭제 <2016.2.26.>
4. 건강교육 <개정 2008.2.29.>
5. 기타 대학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<개정 2008.2.29.>

제3조(소장) ① 건강센터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임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5.2.6.>

②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건강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08.2.29.>

제4조(직원) 건강센터에 직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0.7.7.>

제5조(기구 및 사무분장) ① 건강센터에 건강관리부 및 진료부를 둔다. <개정 2008.2.29.>

② 건강관리부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향상을 위한 건강상담·집단검진·구강건강·임상검사방사선 검사와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6.2.26.>

③ 진료부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진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
제6조(건강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건강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강센터에 건강관리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08.2.29.>

② 건강관리위원회는 의무부총장, 소장, 의학전문대학원장, 간호대학장, 신산업융합대학 체육과학부장, 약학대학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재무처장 및 부속병원장으로 구성하고, 의무부총장은 위원장이 되며, 의무부총장 유고시에는 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08.8.19., 2016.2.26.>

제7조(건강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) 건강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08.2.29.>

1. 대학 건강관리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
2. 건강센터의 사업계획·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<개정 2008.2.29.>
3. 삭제 <1977.10.14.>
4. 건강센터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<개정 2008.2.29.>
5. 건강과 관련되는 교내 타 부서와의 협약에 관한 사항 <개정 2008.2.29.>
6. 기타 대학 건강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<개정 2008.2.29.>

대학건강센터 규정

제8조(건강관리위원회의 회의) 건강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08.2.29.>

제9조(건강관리연구위원회) ① 대학 건강문제에 관한 연구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건강센터에 건강관리연구위원회를 두고, 위원회에 연구위원 약간 명을 둔다. <개정 2008.2.29.>

②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시간강사 중에서 소장이 건강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며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. <개정 2008.2.29.>

③ 연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그러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하되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사업계획 등) 소장은 건강센터의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건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사업년도 개시 1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>

제11조(사업보고 및 결산서) 소장은 건강센터의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보고, 결산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건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사업년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>

제12조(경비 및 현금출납) ① 건강센터의 경비는 건강관리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<개정 2008.2.29.>

② 건강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과에서 관리한다. <개정 2008.2.29.>

제13조 삭제 <1977.10.14.>

부칙 <1973. 4. 30. 제정>

이 규정은 197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77. 10. 14. 개정>

이 규정은 1977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82. 5. 18. 개정>

이 규정은 198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9. 4. 22. 개정>

이 규정은 199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2. 29. 개정>

이 규정은 2007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8. 19. 개정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 7. 7. 개정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 2. 6. 개정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2. 26. 개정>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